

의안번호	제 5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7월 일 (제 292 회)

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0년 7월 2일

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
----------	---

제출연월일 : 2010. 7. 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개정이유

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 분교장을 본교에 통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소규모 초등학교를 폐지함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학교 폐지

1) 병설유치원

명 칭	위 치	폐지년월일	폐지사유
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-1	2010.9.1.	초등학교 폐지 (휴원중)

2) 초등학교

명 칭	위 치	폐지년월일	폐지사유
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	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-1	2010.9.1.	학생수 감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관계기관(부서)협의 : 협의 완료

다. 기타

1)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
2) 입법예고 : 2010. 6. 4. ~ 6. 14. 의견 없음

3) 기타 : 2010. 학교 통·폐합 현황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 남일초등학교두산분교장란을 삭제한다.

별표 6의 남일초등학교두산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 4] 초등학교(제2조관련)		[별표 4] 초등학교(제2조관련)	
명 칭	위 치	명 칭	위 치
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	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번지	〈삭 제〉	〈삭 제〉
[별표 6] 유치원(제2조관련)		[별표 6] 유치원(제2조관련)	
명 칭	위 치	명 칭	위 치
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	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번지	〈삭 제〉	〈삭 제〉

관계법령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0046호, 2010. 2. 26, 일부개정]
제20조 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 - 5. 학교 그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2010. 학교통·폐합 현황

□ 목 적

- 이농현상 및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 불가하여 통·폐합을 통한 교육과정 정상화, 교육경쟁력 강화

□ 현 황

- 폐지학교 (학생수 기준 : 2010.4.1)

대 상 교	위 치	학생수	폐지년월일	비고
남일초두산분교장병설유치원	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-1	·	2010. 9. 1	휴원중
남일초두산분교장	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-1	5	2010. 9. 1	

- 통합교

학교명	구 분	만4세반		만5세반		혼합반		특수학급		계	
		완아수	학급수	완아수	학급수	완아수	학급수	완아수	학급수	완아수	학급수
남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	통합전					20	2			20	2
	통합후					20	2			20	2

학교명	구 분	1년		2년		3년		4년		5년		6년		특수학급		계	
		학생수	학급수	학생수	학급수	학생수	학급수										
남일초등학교	통합전	46	2	45	2	52	2	72	3	76	3	53	2	4	1	344	15
	통합후	46	2	45	2	54	2	72	3	76	3	56	2	4	1	349	15

□ 기 타

- 폐지학교 학생 통학편의 지원계획

- 차 량 : 콜벤 이용
- 소요액 : 1,400천 원 [1일 14,000원 × 100일 (2학기 수업일수) =]
- 교육장재량사업비(청원교육청) 지원계획
- 2011년이후 임차차량, 택시비, 통학비의 직접지급 등 다양한 방법 검토